간호학생 현장 실습 협약서

2026학년도 대한산업보건협회 대구지역본부(이하 '기관'이라 한다)와 대구대학교 간호학과(이하 '학교'라 한다)는 간호학과 현장 실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실습 협약은 '기관'과 '학교'의 상호 간 실습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협약기간) 본 협약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작되며,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.

제3조 (상호협의조정) 실습 인원, 기간, 부서 등 실습에 관련된 제반 사항은 '학교'의 요청에 대하여 '기관'이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지며, 협의된 일정에 따라 실습을 진행한다.

제4조 (의무와 권리) '기관'과 '학교'는 간호학생 실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.

① '기관'은 간호학생의 현장 실습을 지도하며, 실습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'학교'에 통보한다.

② '학교'는 학생의 현장 실습 기간 중 사고나 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관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, 학교가 책임을 지고 해결한다.

③ '학교'는 학생이 학교 행사 등으로 실습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 '기관'에 미리 통보한다.

④ '학교'의 학생은 '기관'에서 요구하는 면역력(결핵 포함)이 확보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. 만약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학생과 그의 소속 학교가 진다.

제5조 (배상) '학교'는 실습생의 부주의로 물품의 분실, 파손 등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'기관'에게 배상하여야 한다.

제6조 (기밀유지) '기관'과 '학교'는 실습 중 취득한 기관과 대상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협약 기간 중이거나 종결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
제7조 (안전관리) '학교'는 학생들의 실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, 실습 중 재해나 사고를 입은 경우를 대비하여 학생이 실습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8조 (실습비) 실습비는 당해연도 실습생을 배치한 후 일정액을 지급하며, 일정액은 '기관'과 '학교'와의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.

제9조 (해석)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위의 협약사항을 보증하고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6년 7월 31일

'학교'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50길 33 '기관'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5길 40

대구대학교

총 장 (인)

대한산업보건협회 대구지역본부

본 부 장 (인)